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08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86,819,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681,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0.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위 B으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위 B 소유 주식 420,000주(총 발행주식의 6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7. 1. 25.자로 잔금을 완납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자진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취득세 86,819,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681,9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인 [redacted]공사는 2017. 3. 29. 소외 회사의 대주주변경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30. 위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2017. 6. 16.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 대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과점주주의 성립시기는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인바,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는 관리기관인 [redacted]공사로부터 주주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경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주주변경 승인이 거부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점주주 지위 취득 시기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7. 1. 25. 자신의 반대급부인 이 사건 주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점, ②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바, 기명주식의 명의개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를 결정하는 필수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③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납부한 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입증서류(주주명부 확인서 등) 모두를 발급하게 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던바, 소외 회사로부터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점(주주명부에 기재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소외 회사가 지배주주로 인정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공시 사이트에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 공시한 점, ④ 원고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리기관의 행위는 사전승인이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지가 아니라 '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경우 배후단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단지 이 사건 주식의 양수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행동,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조건부 양수계약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대금을 완납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이후 과점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수계약 해제 효력에 관하여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 상대방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등의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가 양수계약을 해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끝)